#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9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장경태・박민규・강준현

복기왕 • 전진숙 • 김승원

박선원 · 김용민 · 민형배

김민석 · 최민희 · 이재관

양부남 • 이병진 • 문금주

허종식 • 이학영 의원

(17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투명한 회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체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당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지역당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역당후원회

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당후원회는 1억원

제13조제1항 각 호 중 "중앙당후원회"를 각각 "중앙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지역당"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도당"을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당"을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중 "시·도당"을 각각 "시·도당 및 지역당"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당비) ① 정당은 소속 당원       | 제4조(당비) ①          |
| 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u>있다</u> . | <u>있</u> <u></u>   |
|                           | 며, 지역당은 소속 당원이 납부  |
|                           | 한 당비를 해당 정당의 당헌ㆍ   |
|                           | 당규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자    |
|                           | 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          |                    |
| 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                    |
|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                    |
| 수 있다.                     |                    |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          |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   |
| 회를 포함한다)                  | 회를 포함한다) 및 지역당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        |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① |
| ~ ③ (생 략)                 | ~ ③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④ 후원인이 중앙당후원회에     |
|                           | 후원금을 기부할 때에는 지역    |
|                           | 당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중앙당은 해당 후원금   |
|                           | 을 후원인이 지정한 지역당에    |
|                           | 지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

여야 한다.

-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지 (생 략)
  - ②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 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지 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 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후원회에는 각각 200만원

가.·나. (생 략)

<신 설>

4. (생략)

③ ~ ⑥ (생 략)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저

①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 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 <u> </u>            |
|---------------------|
| 세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① |
| (현행과 같음)            |
| 2                   |
|                     |
|                     |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
| 3                   |
|                     |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지역당후원회           |
| 4. (현행과 같음)         |
| ③ ~ ⑥ (현행과 같음)      |
|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
| ①                   |
|                     |
|                     |
| <b>_</b>            |
|                     |
|                     |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 · 예금계좌 · 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없다.

- 1. (생 략)
- <u><신 설></u>
- 2.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제13조(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
     양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
     의원후원회
  - 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

| 1. (현행과 같음)           |
|-----------------------|
| 1의2 지역당후원회는 1억원       |
| 2. ~ 6. (현행과 같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
|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 <u>.</u>              |
| 1                     |
| <u>ਨ</u> ੋ            |
| <u>앙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u> - |
|                       |
| 2                     |

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중</u> <u>앙당후원회</u> 및 지역구에 후 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 원회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u>중</u> <u>앙당후원회</u>,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 ② (생 략)

-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① 제19조 (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 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바 에 따라 제40조 (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 보고 전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 1. 후원회지정권자가 <u>중앙당(중</u> <u>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u> 다) 또는 당원인 경우

| <u>중</u>              |
|-----------------------|
| <u>앙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u> - |
|                       |
|                       |
| 3                     |
|                       |
| <u>중</u>              |
| <u>앙당후원회·지역당후원회</u>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
| 잔여재산 처분 등) ①          |
|                       |
|                       |
|                       |
|                       |
|                       |
| <u>.</u>              |
| 1중앙당                  |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        |
| 함한다), 지역당             |

- 2. (생략)
- ② ~ ⑦ (생 략)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생략)
  - ② 제1항의 당헌·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 2. (생략)
  -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다) 및 시·도당이 물품·용역을 구입·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 ③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 (시·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④ (생 략)

제40조(회계보고) ① 회계책임자 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 2. (현행과 같음)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① (현   |
| 행과 같음)                |
| ②                     |
|                       |
|                       |
| 1.•2. (현행과 같음)        |
|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     |
| <u>다), 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                       |
| ③                     |
| <u>시·도당 및 지역당</u>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
| ④ (현행과 같음)            |
| 제40조(회계보고) ①          |
|                       |
|                       |

| 정치자금의   | 수입과    | 지출에       | 관  |
|---------|--------|-----------|----|
| 한 회계보고  | (이하 "3 | 회계보고      | "라 |
| 한다)를 하여 | ᅧ야 한디  | <b>ŀ.</b> |    |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 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 (<u>시·도당</u>의 경우에는 1월 3 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 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

| 1                 |
|-------------------|
| 가                 |
|                   |
|                   |
| <u>시·도당 및 지역당</u> |
| 나                 |
|                   |
|                   |
|                   |
|                   |
|                   |
|                   |
|                   |
|                   |
| 시·도               |
| <u>당 및 지역당</u>    |
| 다                 |

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 에 의하고, 당해 <u>시·도당</u>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 한다.

- 2. ~ 5. (생략)
- ② ~ ⑥ (생 략)

| <u>시·도당</u> | 및 |
|-------------|---|
| 지역당         |   |
|             |   |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